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6월 18일, 송옥주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6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5.)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송옥주 의원)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

산자조금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자율적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사용됨.

그런데 도축장을 통한 자동거출방식으로 자조금을 조성하는 한우 등 축산물의 경우 자조금 납부율이 100%에 이르는 반면, 개별 농가를 상대로 자조금을 직접 수납하는 구조인 과채류는 자조금 납부율이 40~5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자조금 조성이 불안정한 실정임.

이에 농수산물 유통의 주요 경로인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자조금 운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자조금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거출금(醵出金)과 정부 지원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되며, 특히 의무자조금의 경우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에게 거출금 납부의무가 존재하여 임의자조금에 비해 자조금 조성 및 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음.

그런데, 의무자조금이라 하더라도 농산물 의무자조금의 거출률이 2024년에 82.2%로 나타나는 등, 실제로는 부과된 거출액을 완전하게 수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거출금과 정부의 지원금 외에도, 자조금은 자조금 운용에 따

른 수익금과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의 지원금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의 지원금의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수산업자가 아니더라도 자조금단체에 납부할 수 있는 자금임.

개정안은 이와 같은 지원금과 관련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 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산지의 출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의무자조금이 거출금 및 정부의 지원금 외에도 가외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조금 조성 및 운용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농수산물의 유통업자인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이미 개정안과 무관하게 「농수산물자조금법」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이라는 납부 수준을 새로이 제시하는 것 외의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법령에 의해서도 지원금의 납부주체가 될 수 있는 ‘농수산물의 유통과 관련된 자’ 중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